

# 위험관리기법

〈전호에 이어 Risk Financing 방법이 이어집니다.〉

## ③ 위험의 전가

위험을 안고 있는 가정이나 기업은 Risk를 회피하려 하고, 회피할 수 없는 Risk는 부득이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위험의 전가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험의 전가방법중에서 전형적인 것은 보험제도이며, 이것과 유사한 제도로는 보증과 공제 그리고 기금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험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a) 보험의 이용

보험계약을 통하여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이전시키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보험의 이용은 위험관리면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Risk Management 이론이 정착되기 전에 있었던 전구적(前驅的) 이론이 Insurance Management였었던 점으로 보아서도 보험의 중요성



강 원 희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이 재인식된다고 하겠다.

보험에 의한 위험의 전가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위험을 전가하는데 보험을 이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

둘째, 보험을 이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일

세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결정하는 일이 있다.

따라서 보험을 이용하려는가입자는 보험시장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보험상품의 내용외에도 보험요율 등 보험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선 뒤에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보험가입상의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 (b) 보험가입상의 원칙

기업에 있어서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은 불필요한 보험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낭비하여서도 안되고 또 보험보호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보험가입을 누락시킴으로써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 하여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보험가입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보험을 구입함에 있어서 보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구조 하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 모

두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약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대규모손실부보의 원칙(Large-Loss Principle)이다. 이 원칙은 손실의 발생 확률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발생 가능한 손실의 규모(크기)에 중점을 둔 원칙을 말한다. 즉 다수의 동질적인 exposure 단위(위험 노출 단위)가 집결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상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의 빈도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근거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손해 발생 확률의 파악은 보험가입 의사 를 결정하는 우선순위에서 다음 순위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적으로 보험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손실의 발생 확률은 낮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지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기업)로서는 보험의 이용 이외에 경제적으로 보다 더 훌륭한 대비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적이란 손실 발생 확률이 낮아서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소액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실의 발생 확률은 낮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질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결론을 얻는다. 이 원칙은 보험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의사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는 무공제식보험 (First-Dollar Coverage)을 회피하는 일이다. 즉 대규모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전술한

대로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빈발하는 소규모 손실을 포함한 형태로 보험을 계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빈발하는 소규모 손실을 담보할 경우 보험자측의 손해사정비, 경상비 등이 포함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공제식 보험(無控除式保險)은 피보험자가 이용하는 보험 형태로서는 가장 고가의 담보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보험이용을 검토할 때에는 공제방식보험인 Deductible(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Deductible(공제) 제도는 보험 종목별로 상당히 채택되고 있으나 좀 더 합리적인 이용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든 Deductible(공제)제도는 기업의 재정 능력, 손해 발생 빈도에 비추어 보아 보험료의 절감이 생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④ 위험요소의 확인

보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체가 안고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어떠한 형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과거의 기록자료를 참조하여 확인한다. 그러나 위험요소의 확인은 과거의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모든 구성원이 Risk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단히 주의를 기울

인다는 인식이 특정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시키는 일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대상(exposure unit)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상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자산(Assets)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자산에는 부동산·동산 등 유체 물과 각종 권리 등의 무체물이 있다. 모든 자산은 다른 정보원과 함께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감가상각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업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면 모두 정리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한편 자산에 관한 손실의 형태는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실이나 폭발·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이 있다. 또 공장의 가동 중에 생긴 기계의 고장이나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고 있는 외에 시설 내에서는 이의 관리에 수반하는 책임 손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항목을 단순히 재산 손실만을 생각하여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b) 생산품(Products)

생산품은 자산의 1항 목이지만 생산 업자, 유통 업자에게 있어서는 생산물의 오용(誤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배상 책임의 발생(생산물 책임 소송의 발생)도 고려하여 자산이라는 측면과 함께 생산물 책임의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미국으로 상당량 수출이 되고 있으므로 미국에 있어

서의 생산물배상책임의 동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반적 생산물책임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제도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 (c) Computer

Computer의 보급도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비추어 보아 독립된 위험노출단위로 보아야 한다. Computer 관계의 항목에는 단순한 hardware 외에 software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tape, disk의 내용은 정보가치면에서의 객관적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 가치를 재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Computer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그 이용에 수반하는 범죄나 고장에 의한 손해, 그리고 조작자의 신체장애(직업병)도 관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Computer에서 발생할지 모를 손실의 형태는 재산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순수익의 상실, 배상책임손실도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의 위험확인을 한층 더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 (d) 생산과정

생산업·제조업의 경우 특히 중시할 위험노출부문은 생산·제조 과정이다. 자산의 부분에서 적절한 대로 생산중단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순수익의 상실을 초래 하므로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위험요소에 주목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피상성이 높은 부문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위험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더욱이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생산물 품질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생산물책임과의 관련에서 발생하므로 품질관리가 일정 기준하에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기계장치류의 유지·점검을 위한 계획수립도 위험의 확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 (e) Service

서비스의 제공이 기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업무상의 과오가 배상책임의 손실을 발생시킬 근원이 된다. 즉 설계, 회계, 법률, 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며, 또 Computer 이용산업의 경우에는 종래에 없었던 정보에 관련된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주의도 불가결해진다.

#### (f) 산업재해

인사상 산업재해의 문제는 특히 중요한 위험요소이며, 종업원 수, 노동환경, 고용방법, 훈련방식 등이 검토요인이 된다. 산업재해에서는 재해보상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 (g) 배상책임

권리의무사상의 보급과 소비자보호운동의 확산 등으로 배상책임위험은 기업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배상책임위험의 발생원을 대별하면 고객을 포함한 대중, 종업원 등에서 발생한다. 대중에 관해서는 생산품·서비스에 관한 책임, 시설관리책임, 조업에 관한 책임, 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종업원에 대해서는 근

로자 재해보상책임, 안전위생 관리책임, 그리고 근로복지관계에 의한 계약책임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이사진(理事陣)에 대한 책임(Directors & Officers Liability)도 추궁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기업풍토로서는 아직 일반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클 것이나 장래에는 이러한 위험도 배제될 수 없는 시대가 오리라고 본다.

#### (h) 수익

기업이 경영체로서 존속되어야 할 불가결의 조건은 수익의 발생일 것이다. 수익에 관해서는 판매력(판매수량·판매가격)외에 공장, 창고, 판매, 출고, 조업여력, 종업원의 사기 등을 상호 연관해 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장내의 설비공장은 생산중단의 시간, 비용, 대체설비의 입수 가능성 등과 연관해서 모두 순수익의 감소,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중단에 의한 순수익의 상실은 고정비부분(특히 인건비)에다 대체설비의 도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8개 항목에 걸쳐 위험요소의 원천이 될 대상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대상을 밀도있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소 정보원(情報源)을 찾아내는 일이라 하겠다. 그래야 경제적인 보험가입의 동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W)

〈다음호에 계속〉